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채인묵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25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5월 25일  
발 의 자 : 채인묵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김소양, 김인제, 김혜련,  
박순규, 서윤기, 이병도,  
이영실, 이준형, 전석기,  
최웅식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2011년부터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,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한 청소년 사망이 매년 줄어드는 것과 달리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. 또한 ‘서울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’(2021년 12월 발표)에 따르면, 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자살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하여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음.
- 또한, 교육청은 학생들의 자살방지와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‘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’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정시기에만 검사가 실시되어 (초1-4, 중1, 고1, 특수, 각종학교),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.
- 따라서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·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청소년이 원하는 경우 상시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학생자살 예방계획에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을 포함토록 함(안 제4조 제2항)

- 나. 생명존중위원회의 자문사항에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의 추진과 평가를 추가함(안 제5조제4항)
- 다. 상시적인 정신건강 상태의 측정과 검사 등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5호를 제4조제2항제6호로 하고, 제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5.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

제5조제2항제4호를 제5조제2항제5호로 하고, 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4.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의 추진과 평가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정신건강 증진 지원) 교육감은 학생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상시적인 정신건강 상태의 측정 및 검사
2.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
3.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홍보
4. 그 밖에 교육감이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학생자살 예방계획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4조(학생자살 예방계획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</u></p> <p>6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5조(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의 추진과 평가</u></p> <p>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10조(예산의 지원)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제10조(정신건강 증진 지원) 교육감은 학생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상시적인 정신건강 상태의 측정 및 검사</u></p> <p>2. <u>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</u></p> <p>3. <u>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홍보</u></p> <p>4. <u>그 밖에 교육감이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